

비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4. 9. 20.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추진배경 및 의의	1
II. 비축전문위 개요	2
III. 비축전문위 역할	3
IV. 향후 추진사항	4

I. 추진배경 및 의의

① [추진배경]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 ⇒ 비축의 중요성 대두

- 그간 글로벌 가치사슬(GVC) 발달로 효율성이 강조되었으나, 美中 전략 경쟁, 국가간 전쟁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

⇒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 Just in Time (JIT) → Just in Case (JIC)
(적시공급) (만약에 대비하는 공급)

- 수급불안에 대비한 공급망 안전성(security)과 회복력(resilience) 확보가 중요 → 공급망 안정화의 보루로써 비축 중요성 부상

② [주요국 비축동향] 핵심자원 비축을 국가적 의제화

- 美는 국방수권법(NDAA)에 근거하여 리스크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국가방위비축 재원 확대 및 비축 관련 의무* 강화

* 반도체, 희토자석 등에 대한 비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비축 타당성 평가, 비축 현황 및 구매계획 등을 필수적으로 의회에 보고

- EU는 국가별 전략적 중요 원재료 비축 상황* 등을 공유하고, '민간 주도·정부 지원'이라는 비축 체계 수립

* 이용 가능한 비축 수준, 비축 수준의 추이, 전략적 비축의 규칙·절차 등

- 日은 '20년 희소금속 비축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정부 역할·정보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광종별 차등적 비축목표 설정

③ [의의] 분절적 공공비축 기능 체계적 관리

- 공급망안정화법 시행(6.27일)을 통해 기관별로 분절화된 비축 정책을 통합적·협력적으로 전환 → 비축 체계 고도화

⇒ 체계적인 범정부 비축전략 수립,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범정부 협력의 장으로 기능

II. 비축전문위 개요

- ◇ (기능)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범정부 비축정책 검토 및 비축 통합관리
(구성) 정부위원 + 민간위원 등 ⇒ 안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근거) 「공급망안정화법」 제10조 및 제25조

- ① (제10조)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② (제25조)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을 비축·관리하기 위해 ①국내외 비축 설비 확충, ②비축 확대, ③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시책 수립·추진 가능

□ (목적) 비축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 검토·조정

□ (구성) 경제안보품목 주요 부처 정부위원 및 관련 분야 민간위원

- (정부) 기재부 2차관(위원장), 조달청 차장 및 산업부, 농식품부 등 주요 부처 1급 위주 위촉

* (간사) 기재부 재정차관보, 조달청 차장

- (민간) 경제안보품목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위촉

- (기타) 필요시, 경제안보품목·EWS 관련 부처 등 참석

< 비축전문위원회 구성 >

구분	위원	비고
정부 위원 (4명)	기획재정부 2차관	위원장
	조달청 차장	간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민간 위원 (6명)	김동순 세종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전략센터 연구원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경제연구실 실장	
	유지훈 한국재료연구원 나노재료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조은애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기타*	유관 부처	참석

* 식약처, 방사청은 중요 분야(의료, 방산) 소관 부처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상시 참석

□ (개최 주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공급망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

Ⅲ. 비축전문위 역할

- **(비축 통합 관리)**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비축전략 및 협력 사항 등 논의

* (각 기관) 범정부 비축전략에 맞춰 품목 특성을 고려한 비축 방안 수립·시행

- ① **(품목)** 시장 변화를 고려한 품목별 연간 비축계획, 기존 비축 물량의 확대·축소, 비축 대상 품목의 지정·해제 등 검토
- ② **(방식)** 비축 효율성 및 수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비축 방법 (정부 구매+민간 비축, 민간 구매+민간 비축)의 다양화 논의
- ③ **(인프라)**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비축시설의 신설·확충 등 논의
- ④ **(상시 관리)** 비축물자의 보관 및 관리 등 제반 사항* 검토
* 재고 순환, 품질 저하 등에 따른 폐기 및 손실 처리, 타소 비축 및 민간 대여, 희소금속 이관(조달청 → 광해공단) 등
- ⑤ **(위기 대응)** 공급망 장애 및 시장 변동성 발생 시, 상황별 비축 물자 방출 등 주요 사항 논의*
* 비축 관련 위기 발생 대응 매뉴얼 등

- **(예산·제도개선)** 기관별 비축예산 현황 파악 및 공급망안정법과 기관별 비축 관련 근거 법령과의 연계* 강화

* 조달사업법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령, 방위사업법령, 석유사업법령, 도시가스 사업법령 등에 공급망안정화법 관련 명시적인 내용 없음

- **(비축예산 사전 논의)** 기관별 차년도 비축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비축전문위원 의견 청취 및 부처간 협의
- 각 기관 차년도 예산요구안 마련(1~3월) → 비축전문위 사전 논의(3~4월) → 각 기관 예산요구안 제출(~5.31.)

IV. 향후 추진사항

① (비축기준) 범부처 비축기준 마련 및 기본계획 반영

- ①분야별(산업, 민생, 방산 등) 비축기준 마련 ⇒ ②공급망 기본계획 반영 ⇒ ③경제안보품목별 비축 방안 마련

- (분야별 소관 부처*) 비축 목적 및 비축 방향 설정, 비축 품목·규모·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화(~9월)

* 산업부(광물), 농식품부(농축수산), 방사청(방산), 식약처(의약품) 등

- (전문위) 분야별 비축기준(안)*에 대해 관계 기관 의견 수렴 후 비축기준 확정 및 기본계획 반영(비축전문위 ⇒ 공급망위, ~11월)

- (소관부처)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비축기준(필요시) 및 비축 방안 마련(~'25.1월), 시행계획에 세부 비축기준 반영(~'25.2월)

② (비축계획·예산) 비축계획 및 비축예산 사전 논의

- (전문위) '26년 기관별 비축계획 검토 및 비축예산 요구 현황 파악(~'25.3월)

- (소관부처) '26년 비축예산 요구안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25.5월)